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업무방해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상법위반



[서울고등법원 2012. 8. 17. 2012노832,2012노1240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항 소 인】

【검사】 윤석열외 7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이대복 외 21인

【원심판결】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21. 선고 2011고합403(분리), 562-1(분리), 624, 730, 1084, 1133, 1138, 1216, 1352, 1407(각 병합) 판결 / 2. 울산지방법원 2009. 6. 30. 선고 2008고합374, 2009고합15(병합) 판결

【주문】

1

【파기 부분】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, 2, 4, 5, 10, 11, 12, 13, 21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7)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3, 6, 8, 9, 15, 20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6)에 대한 부분,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1, 2, 4, 5, 12의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의 점,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, 4, 5, 15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부분을 각 파기한다.<br

【파기 부분】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, 2, 4, 5, 10, 11, 12, 13, 21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7)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3, 6, 8, 9, 15, 20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6)에 대한 부분,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1, 2, 4, 5, 12의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의 점,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, 4, 5, 15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부분을 각 파기한다.<br

【파기 부분】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, 2, 4, 5, 10, 11, 12, 13, 21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7)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3, 6, 8, 9, 15, 20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6)에 대한 부분,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1, 2, 4, 5, 12의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의 점,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, 4, 5, 15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부분을 각 파기한다.

(배임) 부분을 각 파기한다.

【유죄 부분】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가하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2. 피고인 13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6>>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병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5b>

【유죄 부분】1. 피고인 1을 별지 ' 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 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 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 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 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2. 피고인 13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50>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병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5b>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병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4b>

【유죄 부분】1. 피고인 1을 별지 ' 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 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 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 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4b>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병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5b>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 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 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 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단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점에 21를 참한 21를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[유죄 부분]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병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 21을 점에 참한 21을 참한 21을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병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 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 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경우 지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 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 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경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

[유죄 부분]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병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 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 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경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 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 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 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 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 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강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유예한다. 15.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4b>

【유죄 부분】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목록 기재 판결 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 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경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2. 피고인 13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2. 피고인 13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2. 피고인 13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2. 피고인 13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<br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 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 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경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병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5b>

【유죄 부분】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2. 피고인 13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【유죄 부분】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 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 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1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5b>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병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4b>

【유죄 부분】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목록 기재 판결 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 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2. 피고인 13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4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45>

【유죄 부분】 1. 피고인 1을 별지 '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' 목록 기재 판결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, 같은 목록 기재 판결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2를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별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, 병지 '피고인 2가 2009. 12. 11. 이후에 행한 범행'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. 3.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. 4.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. 5.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6.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7.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8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9.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0.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1.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3.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4.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15.

【무죄 부분】피고인 10, 20, 21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의 점은 무죄

【무죄 부분】피고인 10, 20, 21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의 점은 무죄

【무죄 부분】피고인 10, 20, 21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의 점은 무죄

【항소기각 부분】피고인 7, 14, 16, 17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4), 19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5)의 항소와 제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10, 11, 12, 13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, 피고인 2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의 점, 피고인 7, 14, 16, 17, 18, 1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.

【항소기각 부분】피고인 7, 14, 16, 17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4), 19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5)의 항소와 제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10, 11, 12, 13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, 피고인 2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(사기)의 점, 피고인 7, 14, 16, 17, 18, 1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